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실 규정

제정 2008. 01. 01.

개정 2010. 02. 05.

개정 2020. 03. 01.

개정 2024. 10.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의 치의학교육실(이하 교육실)에 대한 사항을 다루며, 치의학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교육실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되며, 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 ② 당연직위원으로는 교무부학과장과 교육실장을 두며,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이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교육실은 운영책임자인 교무부학과장, 실무책임자인 교육실장과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교육실은 PBCL부, 실험실습부, 인문사회치의학부, 주제강의부, 논문연구부, 임상술기평가부의 부서로 구성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① 교육실은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4.10.23.)
 1. 치과대학 역량의 검토, 평가, 연구개발, 공개에 대한 지원
 2. 역량기반 학생평가체계의 기획, 연구개발, 운영에 대한 지원
 3. 교육과정 기획, 연구개발, 조정, 지원
 4. 연간 교육일정 수립, 조정 및 시간표작성
 5. 각 교육프로그램별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관리
 6. 교육방법 연구 및 개발 지원
 7. 교육평가 연구 및 개발 지원
 8. 교육매체 연구 및 개발 지원
 9.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과 관련된 교육지원업무
 10. Faculty development program 개발 및 운영 지원
 11. 교육과정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업무교육과정 기획, 연구개발, 조정, 지원
-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과정위원회에 항시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각 부서별 책임자의 임무)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편

부
설
기
관
규
정

① PBCL부 책임자

1. PBCL 운영 계획 수립 및 Moderator 조정
2. PBCL 운영에 관한 기타 업무

② 실험실습부 책임자

1. 학생 기초치의학 및 임상전단계 실습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학생 임상실습관련 장비 및 기구, 재료의 구매 및 관리
3. 학생 실험실습 운영에 관한 기타 업무

③ 인문사회치의학부 책임자

1. 인문사회치의학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2. 인문사회치의학 운영에 관한 기타 업무

④ 주제강의부 책임자

1. 연간 주제강의 교육일정 수립 및 조정
2. 주제강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업무

⑤ 논문연구부 책임자

1. 연간 논문연구 진행, 심사, 발표회 일정 수립 및 조정
2. 논문연구 결과 발표 및 심사에 관한 기타 업무

⑥ 임상술기평가부 책임자

1.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 실습 및 평가일정 수립 및 운영
2. 임상술기평가와 술기센터 운영에 대한 기타 업무

제5조(회의) 회의는 교무부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0. 2. 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4. 10. 23)로부터 시행한다.